



「KB 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예금주와 은행간 전문(電文)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KB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형의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취급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 정기예금		
가입금액	▪ 제한 없음		
계약기간	▪ 36 개월에서 60 개월(5 년)이내에서 연, 월, 일 단위로 계약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불가		
기본 이자율 (2025.06.01 기준)	(세금공제 전, 연%)		
	계약기간		이자율 (연%)
	월구간	일구간	
	1 개월 ~ 3 개월 미만	28일 이상 ~ 93일 미만	0.65
	3 개월 ~ 6 개월 미만	93일 이상 ~ 183일 미만	0.95
	6 개월 ~ 9 개월 미만	183일 이상 ~ 274일 미만	1.05
	9 개월 ~ 12 개월 미만	274일 이상 ~ 367일 미만	1.15
	12 개월 ~ 18 개월 미만	367일 이상 ~ 555일 미만	1.25
	18 개월 ~ 24 개월 미만	555일 이상 ~ 735일 미만	1.30
	24 개월 ~ 30 개월 미만	735일 이상 ~ 915일 미만	1.35
	30 개월 ~ 36 개월 미만	915일 이상 ~ 1096일 미만	1.35
	36 개월 ~ 60 개월 미만	1096일 이상 ~ 1830일 이하	1.40
60 개월		1.45	
적용이자율	▪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 기간별 약정이자율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산출근거) (세금공제전, 2025.06.01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경과기간</th><th>일반중도해지 이자율</th></tr> </thead> <tbody> <tr> <td>32개월 미만</td><td>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td></tr> <tr> <td>32개월 이상</td><td>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td></tr> </tbody> </table>	경과기간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32개월 미만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	32개월 이상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
경과기간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32개월 미만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						
32개월 이상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산출근거) (세금공제전, 2025.06.01 기준)	▪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 가입자의 사망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한 경우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계약기간	경과기간	적용 이율
36개월 이하	24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12개월제 약정이자율
	24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24개월제 약정이자율
60개월 이하	24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12개월제 약정이자율
	24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24개월제 약정이자율
	36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디폴트옵선행 36개월제 약정이자율

* 경과: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단, 특별중도해지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분할해지

- 분할해지는 만기(중도)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근로자)별로 횟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지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3.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만기후이자율
(산출근거)
(2024.02.20 기준)**

(세금공제전, 연%)

경과기간	이자율
만기후 1개월이내	만기이자율 X 50%
만기후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이자율 X 30%
만기후 3개월초과	0.2

- 만기이자율 :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일반정기예금 고시이자율 적용
-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상품 - 예금 - 예금 가이드 - 예금금리 안내 - 목돈굴리기 예금금리]

이자지급시기

- 신규일 및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만기처리방법	-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 만기 상환되는 경우 만기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상환되며, 약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디폴트음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거래방법	▪ 예금주와 은행간 전문(電文)을 통해 거래	
계약해지방법	▪ 만기 자동해지(만기예금 편리입금 서비스) 불가 ▪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해당일수만큼 약정이자를 차감하고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주1)}, 가압류^{주2)}, 질권^{주3)}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 1)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 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보호)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비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주1)}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주2)}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자료열람요구권	- 금용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연금상품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